

우송교양대학 운영규정

제 정 2012. 3.
전부개정 2020. 5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 학칙 제4조에 의거 설립된 우송교양대학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요직무) 우송교양대학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교양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및 이에 관한 연구 및 지원
2. 학기별 교양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
3. 교양교육에 관한 발전 계획의 수립
4. 교양교육과 관련한 교수-학습의 지원
5.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
6. 교양교육과 관련한 교육 시설의 운영 및 관리
7. 기타 교양교육에 관한 사항

제2장 교양 교육과정

제3조(교양 교육과정) ① 본교의 교양교육을 위하여 교양 교육과정을 운영한다.

② 교양 교육과정은 본교의 학칙에 따라 편성하고 운영한다.

③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 등은 우송교양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본교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 받는다.

④ 우송교양대학은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, 그리고 교과목 개발 등에 관한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한다.

제3장 조직 및 역할

제4조(조직) 우송교양대학에는 학장, 부학장, 주임교수 그리고 행정과(팀)장을 보임한다.

제5조(학장) ① 학장은 본교의 교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로서 보하며,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학장은 제2조의 우송교양대학의 직무를 통괄하며 우송교양대학을 대표한다.

제6조(주임교수) ① 주임교수는 우송교양대학 내 각 교실의 책임자로 보임한다.

② 주임교수는 학장을 보좌하여 담당 영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7조(우송교양대학의 지원 조직) ① 우송교양대학에는 행정팀, 글쓰기교실, 외국어교실, 인문사회교실, 과학기술교실, 비교과교실을 둔다.

② 행정팀의 구성, 직원 배치, 업무분장 등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③ 행정팀은 학장의 통솔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④ 교양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연구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교양교육연구소를 둘 수 있다 .

제4장 교양교육운영위원회

제8조(구성) ① 우송교양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교육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주임교수, 교무처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외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
제9조(위원장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③ 교양교육운영에 필요할 경우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으로 선임한다.

제10조(간사위원)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,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집행한다.

제11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우송교양대학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2. 우송교양대학의 내규 및 지침 등에 관한 사항
3. 교양 교육과정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
4. 교양 교과목의 설강 및 교강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
5. 기타 우송교양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12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구성, 역할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5장 기타

제14조(재정) 우송교양대학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충당한다.

1. 우송교양대학을 위하여 본교에서 배정된 금액
2. 기타 보조금 등

제15조(회계) 우송교양대학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16조(규정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7조(운영세칙) 우송교양대학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전부개정 2020.05.12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